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9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2.

발 의 자 : 진선미 · 이건태 · 김한규
양문석 · 박정현 · 민형배
김우영 · 박은정 · 문대림
윤종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,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.

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,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5제1항).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5제1항 중 “학교(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”를 “학교(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”으로, “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”를 “사람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5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 ① <u>학교(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(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.</u> ② ~ ④ (생 략)	제23조의5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 ① <u>학교(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